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허6304 거절결정(특)
원 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만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서병국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자영
변 론 종 결 2012. 12. 13.
판 결 선 고 2013.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2. 5. 17. 2011원96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탄성과 소자

2) 출원일(국제출원일)/출원번호: 2009. 9. 17.(2008. 3. 13.)/제10-2009-7019424

호

3)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1]과 같다(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12. 8.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2011. 12. 8.자 보정을 기준으로 그 전의 원고의 출원발명을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하고, 그 후의 원고의 출원발명을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하며,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발명을 '보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발명을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 비교대상발명

2006. 10. 19. 공개된 국제출원공개공보에 'WO2006/109591 A1'(갑 제7호증)으로 실린 '탄성과 소자(Elastic Wave Element)'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이 2007. 3. 17.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 통지를 함에 따라, 원고가 2011. 5. 17.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1. 11. 8.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

교대상발명 등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2011. 12. 8.자 보정을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이로써 개시된 심사전치절차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2012. 2. 1. 이 사건 보정을 승인하고,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여전히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특허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2. 5. 17. 2011원9683호로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특허심판원로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보정을 각하하고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심결에는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을 잘못 특정한 위법사유가 있다.

나. 보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

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된 위법사유가 있다.

3.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의 특정 관련 위법사유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정은 제1의 불특부가 형성되는 위치에 대한 한정인 '상기 갭 근방에 있어서'를 삭제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보정이다.

심사전치결과는 심판의 심리에 참고만 되는 것으로서 심사전치절차에서 보정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정각하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은 심판부가 직권심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심사전치절차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보정을 승인하고 원고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중에 이 사건 보정의 부적법성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허심판원로서는 특허법 제170조 제1항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보정을 각하하여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보정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을 잘못 특정한 위법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출원발명은 2008. 3. 13. 국제출원된 것으로서 그 출원일이 그 국제출원일로 간주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어 2009. 7. 1. 시행된 특허법 부칙 제10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는 위 법률 시행 전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특허법(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70조 제1항은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1조,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제1항 중 "제47조 제1항 제2호"는 "제4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 항 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63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동 항 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로 본다'로 규정하였고,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은 '심사관은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정이 동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같은 항 제3호는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특허법 제170조 제1항은 특허심판원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심리하는 도중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허심판원은 구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되 일정한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의 성격에 따라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으며, 최후 거절이유에 따른

보정이 부적법한 것일 때에는 특허심판원이 구 특허법 제51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하고(법률 제938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하다), 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보정이 부적법한 것일 때에는 특허심판원이 구 특허법 제51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170조 제1항은 특허심판원이 심사전치절차에서 심사관에 의해 각하되지 않은 보정에 대하여 각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한편, 구 특허법 제51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심사전치보정에 대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 수 있고, 특허심판원의 심사전치보정에 대한 보정각하에 대하여는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다투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없었던 경우, 즉, 심사관이 보정을 승인하여 보정된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심사전치보정에 대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원결정을 유지한 경우에 출원인이 그 거절결정의 전제가 된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심사전치보정을 각하할 수 있는 특허심판원이 심사전치보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보정각하를 하지 않고 보정된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경우(심사관이 심사전치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원결정을 유지하고 특허심판원도 심사전치

보정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와 심사관이 한 심사전치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특허심판원이 취소를 하고 심사전치보정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 모두가 포함된다)에는 출원인으로서 심사전치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다.

구 특허법 제51조 제3항에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출원인 스스로 사후에 보정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심사단계에서는 거절결정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을 확정하기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심판단계에서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정기간을 잠탈하여 거절결정 당시의 출원발명으로 재차 보정을 하는 것과 같이 된다. 또한 출원인이 취소소송에서 심사전치보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거절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심결에 대하여 심사전치보정이 위법하므로 보정각하되었어야 함을 사유로 심결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출원인이 심사전치보정에 대하여 각하를 하지 않은 심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출원발명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없는 취소소송단계에서 거절결정 당시의 출원발명으로 다시 보정을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되어 특허출원의 보정에 엄격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출원인에게 거절결정 당시의 출원발명 또는 심사전치절차에서의 보정된 출원발명 중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출원발명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보정각하되지 않은 이 사건 보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심결에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을 잘못 특정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이하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살핀다.

4.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기술분야 대비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진자나 대역필터 등에 사용되는 복수개의 전극지를 가지는 IDT(interdigital transducer) 전극의 구조가 개량된 탄성과 소자에 관한 것인데(갑 제6호증 62-1면 <0001> 참조), 비교대상발명도 공진자나 대역필터 등에 이용되는 복수의 전극지를 가지는 IDT 전극의 구조가 개량된 탄성과 소자에 관한 것이어서(갑 제7호증 명세서 1면 [0001] 참조),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목적 대비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IDT 전극의 형상을 궁리함으로써 공진특성이나 필터특성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고, 단락이나 절연성의 열화가 생기기 어려우며, 특성의 편차도 생기기 어려운 탄성과 소자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갑 제6호증 62-3면 <0012> 참조).

이에 비해 비교대상발명은 한층 양호한 공진특성이나 필터특성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구비한 탄성과 소자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갑 제7호증 명세서 2면 [0009] 참조).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 중 개선된 공진특성이나 필터특성을 갖는 탄성과 소자를 제공하려는 목적은 비교대상발명의 목적과 공통되나,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 중 단락이나 절연성의 열화 및 특성의 편차를 방지하려는 목적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그 목적에 일부 특이성이 있다.

다. 구성 대비

1) 구성요소 분석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압전체와 압전체에 접하도록 형성된 IDT 전극을 포함하는 탄성과 소자로서(이하 '전체부 구성'이라 한다), IDT 전극이 복수개의 전극지를 가지고, 복수개의 전극지가 탄성과 전파방향에 있어서 서로 이웃하고 있으면서 다른 전위에 접속되는 제1, 제2의 전극지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제1의 전극지 선단의 전극지 길이방향 외측에 배치된 갭을 통해 대향되어 있으면서 제2의 전극지와 같은 전위에 접속되어 있는 제1의 더미 전극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제1, 제2의 전극지가 탄성과 전파방향에 있어서 서로 겹쳐 있는 폭을 교차폭으로 했을 때에 교차폭이 가장 큰 최대 교차폭 부분을 IDT 전극의 일단측으로부터 타단측까지 이동함으로써 구성되는 영역인 교차영역 내에 있어서, 제1의 전극지 및 제1의 더미 전극지 중 적어도 한 쪽에 있어서, 적어도 한 쪽의 옆 가장자리로부터 탄성과 전파방향으로 돌출되도록 제1의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과 소자'이다.

2) 전체부 구성 대비

전체부 구성은 '압전체와 압전체에 접하도록 형성된 IDT 전극을 포함하는 탄성과 소자'로서, 비교대상발명의 '압전체와 적어도 1개의 IDT 전극을 구비하는 탄성과 소자'(갑 제7호증 명세서 25면 '청구의 범위 [1] 1행' 참조)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압전체와 압전체에 접하는 IDT 전극을 구비하고 있는 탄성과 소자'라

는 점에서 동일하다.

3) 구성 1 대비

구성 1은 'IDT 전극이 복수개의 전극지를 가지고, 복수개의 전극지가 탄성과 전파 방향에 있어서 서로 이웃하고 있으면서 다른 전위에 접속되는 제1, 제2의 전극지'로서, 비교대상발명의 '복수개의 전극지를 가진 IDT 전극이 탄성과 전파방향에 있어서 서로 이웃하고 있으며, 다른 전위에 접속되는 제1, 제2의 전극지'(갑 제7호증 명세서 25면 '청구의 범위 [1] 1~3행, 30면 도 1a 참조)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IDT 전극이 탄성과 전파방향에 있어서 서로 이웃하면서 다른 전위에 접속되는 복수개의 전극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4) 구성 2 대비

구성 2는 '제1의 전극지 선단의 전극지 길이방향 외측에 배치된 갭을 통해 대향되어 있으면서 제2의 전극지와 같은 전위에 접속되어 있는 제1의 더미 전극지'로서, 비교대상발명의 '복수개의 전극지(31)의 선단에 갭(33)이 배치되고, 그 갭(33)을 통해 전극지(31)와 대향하도록 모형 전극지(34)가 형성되며, 모형 전극지(34)와 제2의 전극지(32)가 같은 버스 바(3b)로 이어져 있는 구성'(갑 제7호증 명세서 11면 [0044], 30면 도 1a 참조)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전극지의 선단에 전극지 길이방향으로 배치된 갭을 통해 대향되는 더미 전극지(모형 전극지)가 구비되고, 제1의 더미 전극지(모형 전극지)와 제2의 전극지가 같은 전위(버스 바)에 접속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5) 구성 3 대비

구성 3은 '제1, 제2의 전극지가 탄성과 전파방향에 있어서 서로 겹쳐 있는 폭을

교차폭으로 했을 때에 교차폭이 가장 큰 최대 교차폭 부분을 IDT 전극의 일단측으로부터 타단측까지 이동함으로써 구성되는 영역인 교차영역 내에 있어서, 제1의 전극지 및 제1의 더미 전극지 중 적어도 한 쪽에 있어서, 적어도 한 쪽의 옆 가장자리로부터 탄성과 전파방향으로 돌출되도록 제1의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의 '서로 이웃하고 있는 제1, 제2의 전극지(31,32)가 탄성경계파 전파방향에 있어서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 즉 교차영역의 치수인 교차폭이 탄성경계파 전파방향에 있어서 변화하도록 교차폭 웨이팅 처리되어 있는 구성'(갑 제7호증 명세서 11~12면 [0047], 30면 도 1a 참조) 및 'IDT 전극(3)의 제1, 제2의 전극지(31,32) 측면에 있어서 갭(35) 또는 갭(33)을 향하는 위치에 볼록부(11,12) 또는 볼록부(13,14)가 형성되는 구성'(갑 제7호증 명세서 12면 [0050], 30면 도 1a, 도 1b 참조)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교차영역 내에서 제1의 전극지 측면에 탄성과 전파방향으로 돌출되도록 볼록부가 형성되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볼록부의 형성 위치에 관하여 구성 3은 제1 전극지 옆 가장자리인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제1 전극지 측면에 있어서 갭을 향하는 위치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구성 3에서 볼록부가 제1 전극지의 옆 가장자리 중 갭을 향하는 위치에 형성되는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볼록부가 제1 전극지의 옆 가장자리 중 갭을 향하는 위치 이외의 위치에 형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볼록부가 제1 전극지의 옆 가장자리 중 갭을 향하는 위치에 형성되는 경우에 비해 기술적 의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볼록

부의 위치를 단순 설계 변경하여 적절히 채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러한 설계 변경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6) 대비결과의 정리

이와 같이,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구성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다.

라. 효과 대비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에 관하여 '본 발명에 따른 탄성파 소자에서는 IDT 전극이 다른 전위에 접속되는 제1, 제2의 전극지를 포함하는 복수의 전극지를 가지고 있고, 제1의 전극지의 전극지 길이방향 외측에 갭이 배치되어 있으며, 갭 근방에 있어서, 제1의 전극지의 적어도 한 쪽의 옆 가장자리로부터 탄성파 전파방향으로 돌출되도록 제1의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 제1의 볼록부의 형성에 의해서, 갭이 마련되어 있는 영역 및 갭 근방의 영역에서의 탄성파의 소망하지 않는 반사나 산란이 억제됨으로 인해 공진특성이나 필터특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 제1의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는 전극지에서는 전극지 선단의 형상의 변화에 의한 특성의 변화가 적고, 따라서 전극지 형상의 제조 편차에 의한 특성의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 더불어 전극지 선단의 갭이 큰 경우에도 공진특성이나 필터특성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위 갭을 넓게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전위에 접속되는 전극지 간의 단락 불량을 억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갑 제

6호증 62-8~62-9면 '발명의 효과' 참조)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에도 공진특성이나 필터특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으므로(갑 제7호증 6~7면(명세서 4~5면) 식별번호 [0023] 참조),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위 효과 중 공진특성이나 필터특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는 비교대상발명의 효과와 같다.

그리고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위 효과 중 특성의 변화가 적고, 다른 전위에 접속되는 전극지 간의 단락 불량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제1의 볼록부가 갭을 형성하고 있는 전극지 자체의 갭 근방에 형성되는 구성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효과인데,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보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효과를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

마. 진보성 유무

따라서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그 목적에 일부 특이성이 있으나, 그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에는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을 잘못 특정한 위법사유가 없고,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한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정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영화

 판사 김승곤

 판사 김 신

[별지 1]

원고의 출원발명

1. 특허청구범위

가. 2011. 12. 8.자 명세서 등 보정서로 보정되기 전의 것

청구항 1. 압전체와, 상기 압전체에 접하도록 형성된 IDT 전극을 포함하는 탄성파 소자로서, 상기 IDT 전극이 복수개의 전극지를 가지고, 상기 복수개의 전극지가 탄성파 전파방향에 있어서 서로 이웃하고 있으면서 다른 전위에 접속되는 제1, 제2의 전극지와, 상기 제1의 전극지 선단의 전극지 길이방향 외측에 배치된 갭을 통해 대향되어 있으면서 상기 제2의 전극지와 같은 전위에 접속되어 있는 제1의 더미 전극지를 포함하며, 상기 IDT 전극의 교차영역에 있어서의 상기 갭 근방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전극지 및 상기 제1의 더미 전극지 중 적어도 한 쪽에 있어서, 적어도 한 쪽의 옆가장자리로부터 탄성파 전파방향으로 돌출되도록 제1의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파 소자.

청구항 2 내지 19 (기재 생략)

나. 2011. 12. 8.자 명세서 등 보정서로 보정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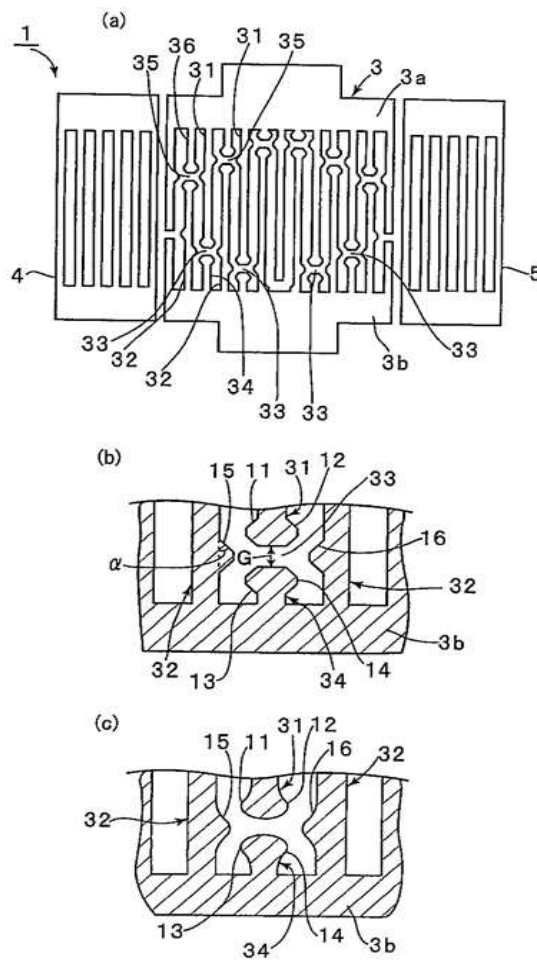
청구항 1. 압전체와, 상기 압전체에 접하도록 형성된 IDT 전극을 포함하는 탄성파 소자로서, 상기 IDT 전극이 복수개의 전극지를 가지고, 상기 복수개의 전극지가 탄성파 전파방향에 있어서 서로 이웃하고 있으면서 다른 전위에 접속되는 제1, 제2의 전극지와, 상기 제1의 전극지 선단의 전극지 길이방향 외측에 배치된 갭을 통해 대향되어 있으면서 상기 제2의 전극지와 같은 전위에 접속되어 있는 제1의 더미 전극지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제2의 전극지가 탄성파 전파방향에 있어서 서로 겹쳐 있는 폭을 교차폭으로 했을 때에, 상기 교차폭이 가장 큰 최대 교차폭 부분을 상기 IDT 전극의 일단측으로부터 타단측까지 이동함으로써 구성되는 영역인 교차영역 내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전극지 및 상기 제1의 더미 전극지 중 적어도 한 쪽에 있어

서, 적어도 한 쪽의 옆가장자리로부터 탄성과 전파방향으로 돌출되도록 제1의 블록 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과 소자.

청구항 2 내지 19 (기재 생략)

2. 주요 도면

[도 1]



<끝>

[별지 2]

비교대상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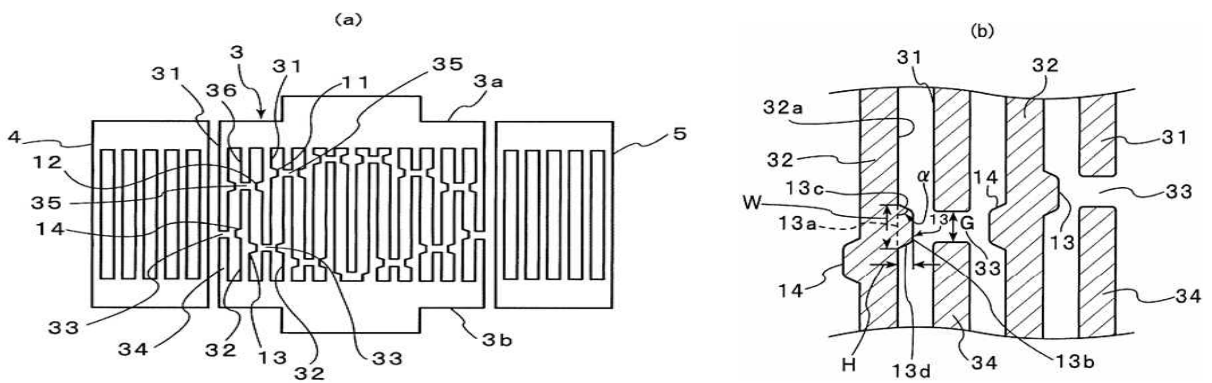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공진자나 대역필터 등에 이용되는 탄성과 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전극지를 가지는 IDT 전극의 구조가 개량된 탄성과 소자에 관한 것이다.

압전체와 적어도 1개의 IDT 전극을 구비하는 탄성과 소자이며, IDT 전극이 탄성과 전파방향에 있어서 서로 이웃하고 있고, 다른 전위에 접속되는 제1, 제2의 전극지를 가지며, 제1, 제2의 전극지의 각 선단의 전극지 길이방향 외측에는 갭이 각각 형성되어 있고, 제1의 전극지의 측면에 있어서 제2의 전극지의 선단 외측에 위치하고 있는 갭과 전극지 길이방향에 있어서 같은 위치와 제2의 전극지의 측면에 있어서 제1의 전극지의 선단 외측에 위치하고 있는 갭과 전극지 길이방향에 있어서 같은 위치의 적어도 한쪽의 위치에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주요 도면

[도 1]



<끝>